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담배,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금액과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액이 달라 행정기관의 법집행에 국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부과금액을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과 일치되도록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군 조례도 이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 (안 별표)

3. 개정안 :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예산상황 : 해당없음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4호가의 부과금액란 중 "5"를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폐기물관리법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나. 다. 라. 마. (생략)					나. 다. 라. 마. (현행과 같음)				